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신고 누락에 대한 취득세 추정 소환

기 관 명 강서구, 기장군

내 용

「지방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농지전용 등을 통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사실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장군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43건 / 102,428,220원 추징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 기장군수는

[시정]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토지의 누락된 취득세 43건 / 102,428,220원을 부과·징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